

제목 :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-상환청구권 없음)

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: 적용

■ 시행 예정일 : 2021.08.16

■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괄한도거래약정서(기업용)</p> <p>제1조 ~ 제8조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본인은 「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」을 위한 _____년 ____월 ____ 일자 포괄한도거래약정서(이하 "원 약정서"라 한다)에 추가하여 <u><신설></u>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및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p> <p>제1조 <생략></p> <p>제2조 (입금계좌의 지정)</p> <p><u>미래대출 대금 및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일 도래시의 대금의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CMS 계좌 제외) 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.</u></p> <p><표 생략></p> <p>제3조 ~ 제6조 <생략></p> <p>제7조 (<u>면책</u>)</p> <p><u><신설></u>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,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괄한도거래약정서(기업용)</p> <p>제1조 ~ 제8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본인은 「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」을 위한 _____년 ____월 ____ 일자 포괄한도거래약정서(이하 "원 약정서"라 한다)에 추가하여 <u>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</u>,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및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p> <p>제1조 <좌동></p> <p>제2조 (입금계좌의 지정)</p> <p><u>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개별대출금의 입금 또는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일 도래시의 결제대금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CMS 계좌 제외)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.</u></p> <p><좌동></p> <p>제3조 ~ 제6조 <좌동></p> <p>제7조 (<u>손실부담 및 면책</u>)</p> <p><u>④</u>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,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</p>	<p>조항 확약 내용 추가</p> <p>문단전체변경</p> <p>면책조항명 변경 번호 채번</p>

<p>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,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. 단,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8조 ~ 제9조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)</p> <p>제1조 ~ 제3조 <생략></p> <p>제 4 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 제 1 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, 거래처가 만기일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③ <생략></p> <p>제 5 조 ~ 제 7 조 <생략></p> <p>제8조 (면책) <생략></p> <p>제9조 ~ 제11조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 <p>제1조 ~ 제7조 <생략></p>	<p>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,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. 단,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 합니다.</p> <p><u>② 이 약정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8조 ~ 제9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)</p> <p>제1조 ~ 제7조 <좌동></p> <p>제 4 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</p> <p>① <좌동></p> <p>② 제 1 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, 거래처가 만기일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<삭제>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③ <좌동></p> <p>제 5 조 ~ 제 7 조 <좌동></p> <p>제8조 (손실부담 및 면책) <좌동></p> <p>제9조 ~ 제11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 <p>제1조 ~ 제7조 <좌동></p>	<p>면책조항 내용추가</p> <p>용어 삭제</p> <p>면책조항명 변경</p>
--	---	---